

I.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배경 및 목적

2020년도 자치 감사 계획에 의한 종합감사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제주한의약연구원을 대상으로 조직 운영 및 인사·복무, 예산·회계 운용, 자산·물품관리 실태, 경영상태 분석 등 업무 전반을 점검·확인하여 부당사항(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고 기관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범위

기관명	감사기간 (예비감사)	감사범위
(재)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	2020. 4. 13. ~ 4. 20. (5일간) (2020. 4. 8. ~ 4. 10. (3일간))	2018년 4월 개원 이후 업무 추진사항 전반
(재)제주한의약 연구원	2020. 4. 22. ~ 4. 27. (4일간) (2020. 4. 20. ~ 4. 21. (2일간))	2016년 개원 이후 업무추진사항 전반

다 감사기간 및 감사단 편성

○ 감 사 단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교육감사팀장 외 4명
- (재)제주한의약연구원: 교육감사팀장 외 3명

II. 감사대상기관 일반현황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가 기관 개요

1) 설립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지역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문화산업 확대를 통하여 제주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2) 법인 설립일: 2018. 3. 5.

3) 설립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민법」 제32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4) 연 혁

년 월	내 용
2017. 5. 24.	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행자부)
2017. 9. 27.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2017. 11. 2.	발기인 총회
2018. 2. 12.	원장 등 임원 임명
2018. 2. 23.	제1회 창립(정기) 이사회
2018. 3. 5.	법인 설립 등기
2018. 4. 19.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개원식
2018. 4. 30.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안부)
2018. 7. 13.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

※ 2018. 4. 19. 제주영상위원회와 CGI, TP의 문화콘텐츠 부문을 통합하여 출범

5) 주요사업

- 영상·문화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 영상·문화산업 개발을 위한 제주문화원형 발굴 및 보존
- 영상·문화 기획자 육성 및 지원
- 영상·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
- 영상·문화상품 유통 지원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 아시아CGI(Computer Generated Imagery) 애니메이션 센터 운영
- 국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정부 등 공모 사업 참여 및 기업 참여 지원
- 그 밖의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시설 현황

- 주요시설 : 2개소
 - 제 주 시 : 제주영상미디어센터(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사무소)
 - 서귀포시 :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 건축물현황

(2020. 2)

구분	소유자	용도	구조	연면적(㎡)	층수	위치
제주영상 미디어센터	제주특별 자치도	· 관람집회시설 · 근린생활시설	철근 콘크리트	5,899.27	지하1층/ 지상2층	제주시 신산로82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	제주특별 자치도	· 방송통신시설	철근 콘크리트	2,338.63	지상2층/ 2개동	서귀포시 동홍로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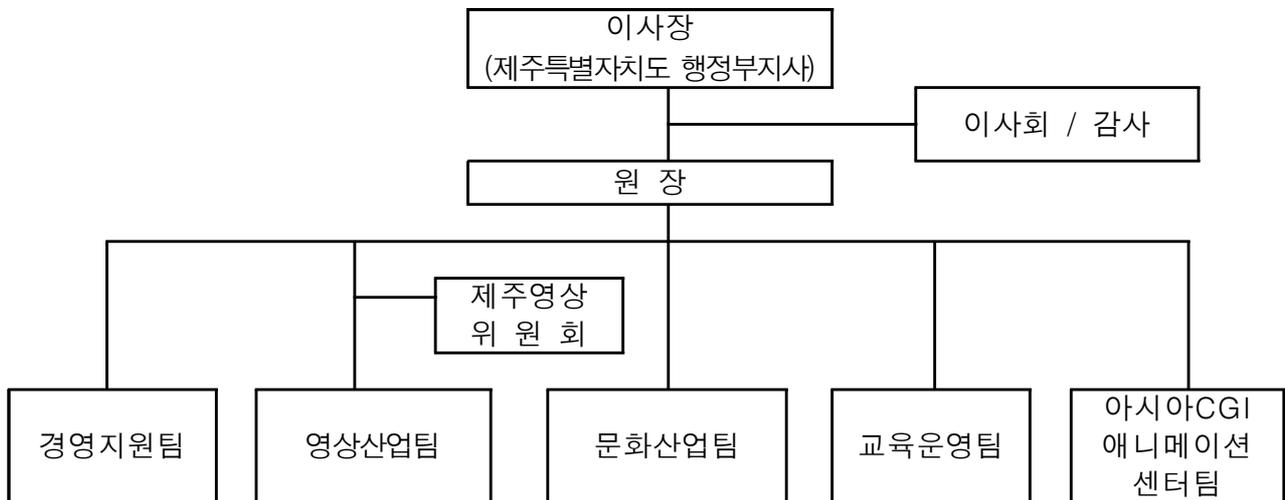
○ 주요시설현황

구분		면적(m ²)	층별내용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본원 (건축 중)	지하1층	1,981.76	· 콘텐츠코리아랩(조성공사 중), 전기실, 기계실 등
	지상1층	3,263.18	· 공연장 및 콘텐츠코리아랩 등 (리모델링 및 조성공사 중)
	지상2층	654.33	· 사무실 등(리모델링 공사 중)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 센터	가동	1층	·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자료보관실, 탕비실, 전기실, 발전기실, 통신실 등
		2층	· 웹툰캠퍼스, 서버 및 랜더팜실, CG제작실, 종합편집실, 음향작업실, 기자재창고 등
	나동	1층	· 카페테리아, 전시실, 시사실, 기자재실 등
		2층	· 기업입주 사무실, 게스트룸, 휴게실 등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 제주관광협회 건물 754.3m²(1층) 임차하여 사용

나 기구 및 정·원(2020. 2. 28.)

○ 기구: 1원장·5팀



○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원장	1~2급	3급	4급	5급	공무직
정원	50	1	5	8	15	10	11
현원	36	1	-	7	6	13	9
결·사원	△ 14	-	△ 5	△ 1	△ 9	3	△ 2

다 예산 규모

○ 수입

(단위 : 천 원)

구분	2018(최종)	2019(최종) (a)	2020(당초) (b)	증감 (b-a)
합계	6,937,500	10,173,574	8,544,635	△1,628,939
보조금	6,825,000	8,387,500	7,930,067	△457,433
사용료수입	95,500	143,931	118,000	△25,931
영업외수입	17,000	1,642,143	496,568	△1,145,575

○ 지출

(단위 : 천 원)

구분	2018(최종)	2019(최종) (a)	2020(당초) (b)	증감 (b-a)
합계	6,937,500	10,173,574	8,544,635	△1,628,939
인건비	1,134,709	1,756,382	1,929,722	173,340
일반경비	1,019,531	1,115,059	842,863	△272,196
사업비	4,175,000	5,999,500	5,643,050	△356,450
기금운용	500,000	591,500	-	△591,500
예비비	108,260	155,430	129,000	△26,430
전년이월사업	-	224,608	-	△224,608
전년도잔액반납	-	331,095	-	△331,095

제주한의학연구원

가 기관 개요

1) 설립목적

- 제주 한방의료, 한약의 육성, 한의학 관련 연구개발 및 한의학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2) 설립일: 2015. 11. 15. (개원일: 2016. 7. 7.)

3)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재단법인 제주한의학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4) 연혁

- (2014. 10. 15.) 재단법인 제주한의학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10. 19.) 보건복지부 법인 설립 허가
- (2015. 11. 15.) 법인설립 등기 완료 / 김태운 초대 이사장 선임
- (2016. 1. 29.) 행정자치부 출연기관 지정 고시
- (2016. 3. 18.) 송상열 초대 원장 취임
- (2016. 7. 7.) 제주한의학연구원 개원
- (2017. 3. 2.) 실험연구실 구축
- (2018. 12. 15.) 오진택 제2대 이사장 선임
- (2019. 4. 1.) 송민호 제2대 원장 취임

5) 주요사업

- 한의학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기업 육성·지원 사업
- 한의학 관련 산업의 과학화·정보화 및 인력양성 사업
-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 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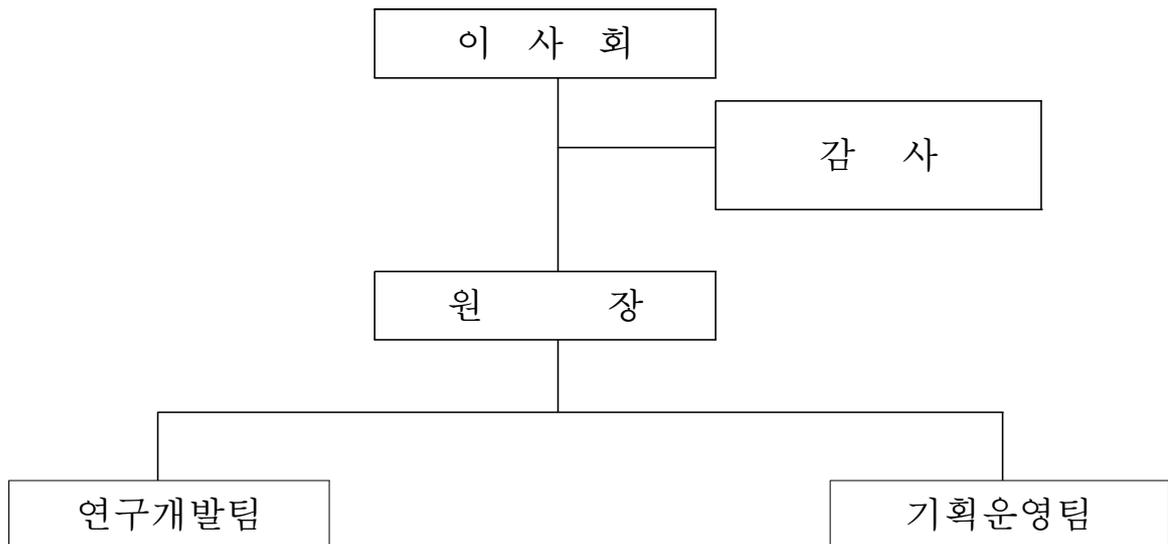
6) 시설 현황

구 분	임대면적(m ²)	소 재 지
사 무 실	295.87	제주특별자치도 침단로 213-3, 220호
연 구 실	298.54	제주특별자치도 침단로 213-3, 419호

※ 제주침단과학기술단지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스마트빌딩 지원시설을 임차하여 사용

나 기구 및 정·원(2020. 2. 28.)

- 기구: 1원장·2팀



○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원장	연구직			연구직 · 사무직	공무직		
			1급	2급	3급	2급	연구지원	연구기술	사무지원
정원	8	1	1	1	1	1	1	1	1
현원	9	1	-	2	1	2	1	1	1
결·사원	1	-	△	1	-	1	-	-	-

※ 제주특별자치도 파견 포함: 1명(행정6급)

다 예산 규모

(단위: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세입	합계	650,000	1,135,071	1,407,529	1,528,570	1,400,000	
	영업수익	-	10,000	320,000	85,000	-	
	영업외수익	650,000	1,000,000	1,000,500	1,200,500	1,300,000	
	자본적수입	-	125,071	87,029	243,070	100,000	
세출	합계	650,000	1,135,071	1,407,529	1,528,570	1,400,000	
	인건비	198,960	322,815	382,275	462,953	516,441	
	일반경비	337,540	508,813	418,247	492,510	345,559	
	사업비	7,000	192,000	468,337	408,107	425,000	
	기금적립금	100,000	100,000	120,000	150,000	100,000	
	예비비	6,500	11,443	18,670	15,000	13,000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권고·통보사항 명세

가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 원, 명)

기관별	합계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통보 (시정 완료)	개선 권고	통보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급	회수	기 타	계	기관 주의	주의 (인원)	경고· 훈계 (인원)			
계	24	4	10,192	-	7 (7,435)	-	2 (7,435)	5	10	10	- (2)	- (2)	1 (2,757)	-	6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6	4	7,435	-	5 (7,435)	-	2 (7,435)	3	7	7	- (4)	-	-	-	4
제주한의학연구원	8	-	2,757	-	2 (-)	-	-	2	3	3	-	-	1 (2,757)	-	2

※ 현지조치 10건: 시정 3건, 주의 7건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7건(시정 2건, 주의 5건)
- 제주한의학연구원: 3건(시정 1건, 주의 2건)

나 처분요구서: 없음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주영상 · 문화산업진흥원

【 】

감 사 위 원 회

시정·주의요구

제 목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탁자)와 매년 사업별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표 1]과 같이 제주지역에서 영상물 촬영에 따른 제작비 등 지원을 위한 ‘제주YYYY 유치·지원 공모사업’ 과 제주도내 영상관련 이벤트 행사 지원을 위한 ‘ZZZZ 육성지원 공모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1]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 현황(2018~2019)

(단위: 천 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액
계	-	-	850,000	766,714
2018	제주YYYY 유치·지원 공모사업	2018. 4. 10. ~ 2018. 12. 31.	300,000	240,624
	ZZZZ 육성지원 공모사업	2018. 4. 4. ~ 2018. 12. 31.	200,000	199,039

2019	제주유치원 유치지원 공모사업	2019. 3. 11. ~ 2019. 12. 31.	170,000	150,633
	육성지원 공모사업	2019. 3. 18. ~ 2019. 12. 31.	180,000	176,418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대항사업에 따른 공모사업 선정 심사 업무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진흥원의 2018년 육성지원 공모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공모사업 심사는 총 2차에 걸쳐 진행하되 1차는 서류심사로 제출된 서류의 미비사항 등을 사무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는 면접심사 및 질의응답으로서 전년 사업 실적평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월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이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4개 평가항목 중에서 “전년사업 실적평가(10)” 분야의 경우 도민 및 관광객 대상 문화향유 기회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하되 신규참여자인 경우 기본 점수 5점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수립한 육성지원 공모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채점표에 평가항목별 점수와 합계점수를 기재한 후 자필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심사할 때에는 각 응모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사항 등이 있는지 1차 서류검토한 후 전년사업 실적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 2차 심사를 하도록 해야 하며, 심사위원이 아닌 자가 심사점수를 부여하거나 심사 채점표에 심사위원 서명이 누락되는 등의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 심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0. 4. 13. ~ 2020. 4. 20.) 중 진흥원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수행한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진흥원에서는 2018년 〰〰〰〰 육성지원 공모사업을 심사하면서 심사위원이 평가하여야 할 사항인 “전년사업 실적평가”와 관련하여 각 응모단체별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 이를 보고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진흥원에서는 “전년사업 실적평가” 항목의 점수란에 임의적인 기준(2017년도 관련 행사 모니터링 대상사업 추진 실적평가 시 각 평가자의 평균점수)을 적용하여 사전에 각 응모단체별 채점표에 미리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점수가 명시된 채점표를 인쇄하여 각 심사위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¹⁾

그리고 〰〰〰〰 육성지원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심사를 하면서 2018년의 경우 심사위원 4명 중 3명이, 2019년에는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표 2]와 같이 채점표에 점수를 수정이 가능한 연필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일부 심사위원은 채점표에 서명을 누락하였는데도 당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채 심사를 완료하였다.

[표 2] 2018~2019 〰〰〰〰 육성 지원 공모사업 심사 관리 부적정 내역

1) 진흥원에서는 2018년 〰〰〰〰육성 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집계하면서 전년사업 실적 평가항목(배점 10점)의 경우 1개의 작품(※※※※※※※※※※)은 인쇄된 채점표상의 점수 8.6점을 반영하지 않고 이보다 적은 5점을 반영한 결과, 지원순위가 한 단계 낮은 순위(채점표상의 점수 반영 시 3순위 → 최종점수 집계 시 4순위)로 지원받게 되었음
→ 진흥원에서는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해당 행사의 경우 관련 신청서류를 검토해 볼 때 신규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 채점표상의 점수(8.6점)가 반영되지 않고 신규 참여 시 기본점수인 5점을 부여하게 되었다고 답변함

연도	사업명	공모사업 심사(채점) 관리 부적정 내역
2018	○○○○ 육성 지원 공모사업	1. 채점표에 점수를 연필로 기재(심사위원 4명 중 3명) 2. 채점표에 점수합계 미기재(심사위원 4명 전원)
2019	○○○○ 육성 지원 공모사업	1. 채점표에 점수를 연필로 기재(심사위원 5명 중 4명) 2. 채점표에 점수합계 미기재(1명) 3. 채점표에 심사위원(1명) 서명 누락 3건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심사위원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3. 공모사업 지원 및 정산업무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진흥원의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관리기관(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신청기관(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이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등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의하여 정산검사를 하고 지원사업자에게 세부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영상물 제작비 지원 운영규칙」 제7조와 제8조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원금의 지급²⁾과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의 검수업무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사업자는 제작비의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 관리·결과보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사후 지원하는 방식임

“3항, 공모사업 지원 및 정산업무 부적정” 과 관련하여 “○○○○○○○○○○ 영화제” 행사의 경우 심사결과와 시상내역 등 증빙이 제대로 되었는지 미처 살피지 못하였고, 지원금의 정산은 사업계획서상의 <부가세 및 수수료, 기타>로 책정해 놓은 자부담금을 근거로 상영관 대관료를 지출하였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정산자료에 대한 검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원사업자가 위 기관에 제출한 과제수행계획서의 예산 지출계획에 상영관 대관료는 기업 협찬 후원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은

① “제2항, 대행사업에 따른 공모사업 선정 심사업무 소홀” 과 관련하여 앞으로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 선정 심사 시 심사위원이 아닌 자가 심사점수를 부여하거나 심사 채점표에 심사위원 서명이 누락되는 등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심사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기 바람.(주의)

② 2018년 ○○○○ 육성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 영화제’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된 상영관 대관료 1,512,300원을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지원사업자로부터 사업 결과보고와 정산내역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과제계획서에 따른 사업 수행 및 정산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등 사업비 지원과 정산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에게 각각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고 한다) 및 진흥원의 「재무 회계 규정」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한 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부정당업자 지정 후속조치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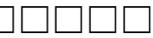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모든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에서는 2019. 11. 27. 서귀포시에 있는 과 ‘창작발전소(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계약을 맺은 후 [표 1]과 같이 2020. 2. 6.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후 다음날인 2. 7.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 사실과 부정당업자 지정 예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였는데도 2020. 4. 20.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회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표 1]  창작발전소(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계약체결 및 해지 명세

(단위: 천 원)

계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해지일	계약상대자	해지사유
□□□□□□□□□□ 창작발전소(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19,300	2019. 11. 27. ~2020. 2. 25.	2020. 2. 6.	 대표 	대표자가 P P P P P 소속 위촉 연구원 신분으로 P P P P P 내규로 대표자 겸직이 제한되어 있어 정상적인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다며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해지 요청 음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부정당업자 지정 대상인 이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

3.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32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한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1인 견적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재무 회계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또는 일반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에서는 2019년도에 사업 규모가 36,000천 원 상당인 ‘제주○○○○○○ 개소식 운영 용역’ 과 67,000천 원 상당인 ‘○○○○○○DAY’ 단일사업을 각각 발주하면서 행사대행업 등의 자격을 갖춘 자와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입찰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표 2]와 같이 특정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가 되도록 2~3건의 사업으로 나눈 후 각각 발주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표 2] 단일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명세

(단위: 천 원)

연번	사업 명	예산액	계약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업체
1	제주○○○○○○ 개소식	36,810 (일반용역비)	제주○○○○○○ 개소식 운영 용역	12,900	2019. 10. 15.	☑☑☑ 주식회사 (대표 ☑☑☑)
			제주○○○○○○ 개소 기념전시 운영 용역	17,900	2019. 10. 15.	☂☂☂☂☂ (대표 ☂☂☂)
2	○○○○○○DAY	67,900 (행사홍보비)	○○○○○○DAY 현장조성 관련 운영 용역	18,000	2019. 10. 16.	△△△△ (대표 ▲▲▲)
			○○○○○○DAY 행사운영인력 및 음향장비 대여 용역	18,600	2019. 10. 16.	* * * (대표 ☂☂☂)
			○○○○○○DAY 행사장 조성을 위한 조형물 용역	19,000	2019. 10. 16.	☂☂☂☂☂ (대표 ☂☂☂)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4. 계약 이행의 검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진흥원의 「재무 회계 규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공사 또는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건을 완납한 때에는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수책임자로 하여금 검수를 하게 하도록 되어있고 검수를 완료한 때에는 검수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48조에 따르면 용역, 공사, 제조 또는 물건매입의 대가는 검수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계약금액 1백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제조 또는 물건매입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면 검수책임자를 지정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에서는 ‘진흥원 ㄴㄴㄴㄴㄴㄴ 교체공사’ 등 22건의 공사, 용역, 제조 또는 물건매입 계약 건에 대하여 검수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그 결과 계약 이행의 검수 소홀로 계약 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2항, 부정당업자 지정 후속조치 미이행” 과 관련하여 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에서는 사업담당자의 퇴사(2020. 2월)로 부정당업자 지정 후속 조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계약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 사실과 부정당업자 지정 예정 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였고, 부정당업자 지정 후속 조치는 계약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이므로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3항,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과 관련하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원활한 행사 준비, 진행을 위해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기업을 조합하여 성공적,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의도치 않게 사업을 분할하여 발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앞으로 단일사업을 발주할 때에는 분할발주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통해 일괄 입찰하여야 하고, 2천만 원 이하로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4항, 계약 이행의 검수 소홀” 과 관련하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은**

- ① “3항,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및 “4항, 계약 이행의 검수 소홀” 과 관련하여 앞으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대가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 ② “2항, 부정당업자 지정 후속조치 미이행” 과 관련하여 앞으로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2명)에게는 각각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연가 일수 산정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진흥원의 「복무 규정」 및 「보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⁵⁾를 기준으로 진흥원 전 직원에 대해 연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연가 일수 산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5)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진흥원 「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일을 이용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별표 2>의 기준⁶⁾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진흥원의 「복무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표]와 같이 정하고 있다.

[표]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단위: 일)

재직기간	연가일수	비고
1년 미만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가를 부여한다.
1년 이상 ~ 3년 미만	15	-
3년 이상 ~ 5년 미만	16	-
5년 이상 ~ 7년 미만	17	-
7년 이상 ~ 9년 미만	18	-
9년 이상 ~ 11년 미만	19	-
11년 이상 ~ 13년 미만	20	-
13년 이상 ~ 15년 미만	21	-
15년 이상 ~ 17년 미만	22	-
17년 이상 ~ 19년 미만	23	-
19년 이상 ~ 21년 미만	24	-
21년 이상	25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에서는 2020년도 직원 연가 일수를 부여⁷⁾하면서 전 직원의 2019년도 미사용 연가 일수는 2019. 12. 31.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소멸되었고 전 직원의 재직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되어 15일의 연가를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이미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한 2019년도 미사용 연가 일수를 2020년도

6) 연차수당 = 연가보상일수 × (통상임금 / 26)

7) 2020. 1. 2. 내부결재 시행

연가 일수에 합산하는 등 직원 22명의 연가 일수를 잘못 부여하였는데도 2020. 4. 20. 감사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본인의 실제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고 연차휴가수당이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다.

3. 연차휴가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⁸⁾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제6조에 따르면 원장은 임원으로 되어 있고, 진흥원의 「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일을 이용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⁹⁾

또한 2018. 3.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체결한 「재단법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¹⁰⁾장 임기 중 성과계약서」 제12조 제2항 및 별표 7 ‘연봉 지급’ 에 따르면 연봉액에는 제수당¹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과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이외의 기타 금전적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 원장에게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함, 즉, 진흥원 원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임

9) 진흥원의 「보수 규정」 제2조에는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10) 2018. 6월.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11) 진흥원의 「보수 규정」 제4장 ‘제수당’ 에 따르면 제수당에는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진흥원에서는 2019. 12. 31. 연차휴가수당 지급 대상자 21명에게 연차휴가수당
계 21,355,640원을 지출하면서 원장은 연차휴가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원장
에게 5,923,070¹²⁾원을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① “2항, 연가 일수 산정 부적정” 과 관련하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 ② “3항, 연차휴가수당 지급 부적정” 과 관련하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에서는 노무사 자문을 통해 원장에게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진흥원
원장이 체결한 성과계약서에는 연봉에 제수당(연차휴가수당 포함) 및 금전적 복리
후생비가 포함되어 있고 성과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이외의 기타 금전적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은 2020년도 소속 직원 연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부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5,923,070원을 회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12) 269,230원(1일 통상임금) × 22일(미사용 연가일수) = 5,923,070원

【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통보

제 목 자체 규정 미준수 및 일부 규정 불합리

관계기관(부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에서는 기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감사규정」 등을 [표 1]과 같이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1] 진흥원 「감사규정」 등 규정 운용 현황

구 분	제정일	최근 개정일	구성내용
감사규정	2018. 2. 23.	2018. 6. 15.	본문 16조와 부칙
여비지급규칙	2018. 3. 16.	2019. 7. 1.	본문 27조와 부칙
시설 및 장비 운영 규칙	2018. 3. 16.	2019. 4. 30.	본문 9조와 부칙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규정 재구성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진흥원 「제규정 관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진흥원의 조직체계와 업무운영에 준거가 되는 제반기준과 절차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능한 한 규정화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2019. 6. 28., 행정안전부) II.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에 따르면 해외출장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여비 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III.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에 따르면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적용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진흥원에서는 업무집행 시 자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업무집행의 명확한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규정을 가급적 구체화하고, 상위 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0. 4. 13.~ 2020. 4. 20.) 중진흥원의 규정 운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감사규정」 제7조에는 감사시기와 범위를 정하여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진흥원에서는 감사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감사대상인 소속 부서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감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게 통보하고 있는 등 [별표 1] “ 「감사 규정」과 실제 운영 사항 비교 내역” 과 같이 자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진흥원의 「여비 지급 규칙」의 경우진흥원 임직원 등이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여비를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표 2]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여비 조례와 「공무원 여비규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표 2] 진흥원 여비 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의 내용 비교

관련 규정 조항	진흥원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공무원 여비 규정」	검토 의견
「여비지급 규칙」 제14조 (여비의 조정)	② 임직원이 임원을 수행하거나 직급이 다른 2인 이상의 직원이 동행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임원 또는 최상급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여비의 조정)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과 부합되게 내용 개정 등 정비 필요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규정 재구성

그리고 진흥원의 「시설 및 장비 운영 규칙」 제6조에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표 3]과 같이 제1항에는 ‘제주영상문화 발전을 위하여 진흥원이 후원·협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할 경우 전액감면, 반액감면, 일부감면 해당 여부를 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항에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원장이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 「시설 및 장비 운영 규칙」의 사용료 감면 규정 내역

관련 규정 및 내용	1. 전액 감면	2. 반액 감면 (사용료의 50%)	3. 일부 감면 (사용료의 25%)
제6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진흥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제주영상문화 발전을 위하여 진흥원이 후원·협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행사 -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거주하는 자가 영상·문화 창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 제주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진흥원이 후원·협찬하는 경우	- 비영리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순수 문화예술행사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주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진흥원이 후원·협찬하는 경우
②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규정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진흥원에서는 2018. 10. 3.부터 같은 해 12. 19. 사이에 도내 소재 기업인 ○○○○○○○○○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 모션캡처실 사용 요청을 받아 이를 대여하여 주면서 위 기업은 도내 기업에 해당하므로 「시설 및 장비 운영 규칙」상 사용료 반액감면(50%)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상황에 따라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거나 일부 사용료(감면을 확인 불가)를 받는 등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시설을 대여하면서 자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율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거나 어떤 기준으로 감면하였는지 알 수 없는 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하고 있다.

그 결과 직원들이 자체 감사실시계획을 알지 못한 채 수감을 하거나, 국내·외 출장 시 예산을 절약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시설 및 장비 대여 시 사용료 감면율을 상황에 따라 임의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여비지급규칙」과 「시설 및 장비 운영규칙」의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은

① 「여비 지급 규칙」상의 여비의 조정 규정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의 관련 규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방안과 「시설 및 장비 운영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 감면대상(전액감면, 반액감면, 일부감면)에 모두 적시되어 있는 “제주영상 문화 발전을 위해 진흥원이 후원·협찬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감면대상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는 등 자체 규칙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규칙을 각각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통보)**

② 앞으로 감사실시 계획 수립 시 내부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통보를 하는 등 「감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비 운영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을 적용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 및 장비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감사 규정」과 실제 운영 사항 비교 내역

관련 규정 조항	규정 내용	실제 운영사항
「감사 규정」 제7조 (감사 실시)	감사는 감사실시에 앞서 <별지 1호>의 서식에 의하여 감사시기, 감사범위를 정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이 감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감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게 통지하면서 참석 요청을 하고 있음
「감사 규정」 제10조 (감사보고)	① 감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차 정기이사회 이전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2호>의 서식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 진흥원 「정관」 12조에 감사는 감사결과를 주무관청(제주특별자치도)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에도 보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감사 규정」 제11조 (감사결과 조치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조치요구를 하지 않고 있음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같음)
「감사 규정」 제12조 (조치결과 통보)	① 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등 조치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감사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있음 (내부적으로 조치결과를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음)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규정 재구성

【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통보

제 목 인사 및 조직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과 자체 「인사관리 규정」 및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따라 인사 및 조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인사원칙 사전공개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018. 9. 5., 행정안전부) III. 직원의 인사
⑤ 보직관리 ‘라.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는 인사운영 방향, 기준 등의 인사원칙을 사전에 공문시행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속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에서는 2018. 4. 19. 개원일부터 2020. 4. 20. 감사일 현재까지 [표]와 같이 인사원칙을 마련하지 않은 채 총 6회의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다.

[표] 전보 인사 실시에 따른 인사원칙 사전공개 미이행 명세

(단위: 명)

연번	인사발령일	인사 인원	인사원칙 수립 여부
1	2018. 12. 31.	6	미수립
2	2019. 5. 1.	3	미수립
3	2019. 9. 1.	1	미수립
4	2019. 12. 16.	2	미수립
5	2020. 2. 10.	3	미수립
6	2020. 3. 1.	3	미수립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직원들이 인사운영 방향 및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등 직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3. 팀장 직무대리 지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진흥원의 「직제 및 정원 규정」 제3조, 제5조 및 [별표 2] ‘직급표’에 따르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진흥원장 아래 5개의 팀을 두고 있고, 팀장은 부서장으로써 원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팀장은 1급 내지 3급으로 직책(보직)을 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진흥원의 「인사관리 규정」 제15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원장은 직원이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0조의5와 같은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팀장 보직이 결원되는 경우 팀장 직위에 보할 수 있는 1~3급 비보직자 중에서 우선 충원하고, 팀장 보직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바로 하위직급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에서는 진흥원의 「직제 및 정원 규정」에 팀장은 직급이 1급에서 3급으로 보하도록 되어있고,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 3급이 3명이나 있으므로 이 중 1명을

공석인 팀장에 보하거나 다른 팀장 보직 부여 등 팀장급 인사를 통하여 팀장 보직을 충원할 수 있었는데도 2020. 2. 10. 공석이 된 팀장 보직에 팀장 보직 부여대상이 아닌 4급 222을 직무대리로 발령하였다.

더욱이 같은 해 2. 27. 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3급 999을 같은 해 3. 1.자로 팀으로 전보인사를 하면서 팀장이 아닌 4급 직무대리 팀장 소속 비보직 직원으로 발령하는 등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팀장 보직 부여가 아무런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고, 팀장과 팀원 직급이 역전되는 기형적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 등 직원 보직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2항, 인사원칙 사전공개 미이행” 과 관련하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현재 정기인사가 아닌 수시인사만 실시하여 인사원칙을 공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인사원칙을 마련하여 공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전보인사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3항, 팀장 직무대리 지정 부적정” 과 관련하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인사원칙
및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통보) 앞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인사 및 조직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사업비 이월예산 편성절차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당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의 경우에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¹³⁾ 운영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명시이월액 또는 연도 내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1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남)를 따르도록 되어 있음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계속비 이월로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본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본예산에는 예산이월 설명서,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이월예산(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예산에 포함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수립 등의 단계에서 사업기간이 수년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사업은 계속비이월이 아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에서는 2020년 본예산에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표]와 같이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전년도 명시이월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6개 사업비 824,049천 원을 포함하는 등 회계연도 개시 후인 2020. 3. 3.에 이르러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같은 해 3. 4.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

[표] 2019년 사업비 이월예산 회계처리 명세

(단위: 천 원)

사업성격	사업명	사업 집행 (예정)기간	사업비	2019년 집행액	2020년 이월액	제1차 ^{주1)} 임시이사회 (2020.3.3.)	제1차 ^{주2)} 정기이사회 (2020.3.31.)
계	6개		1,006,600	182,551	824,049		
출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019. 5.~2020. 3.	136,000	0	136,000	명시이월	명시이월
출연금	홈페이지 통합 개편 구축	2019. 7.~2020. 3.	50,600	0	50,600	명시이월	명시이월
대행사업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2019. 7.~2020. 2.	20,000	3,457	16,543	명시이월	명시이월
대행사업	제주콘텐츠코리아랩 구축	2019. 8.~2020. 6.	500,000	28,948	471,052	명시이월	계속비
대행사업	제주음악창작소 운영	2019. 8.~2020. 2.	100,000	78,982	21,018	명시이월	계속비
대행사업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2019. 8.~2020. 2.	200,000	71,164	128,836	명시이월	계속비

주1) 2020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6건의 이월예산을 명시이월로 확정함

주2) 2019년 결산서를 심의하면서 3건의 이월예산을 계속비로 변경함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제주콘텐츠코리아랩 구축” 등 3개 사업은 집행(예정)기간이 1년 미만으로 계속비이월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산서로는 이월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없는데도 2020. 3. 31.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해당 사업항목에 계속비로 단순 표기한 2019년도 결산서를 심의·의결하였다는 이유로 3개 사업 620,906천 원을 계속비이월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사업비 이월처리의 타당성 등 예산·회계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예산 및 결산 담당자가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발생한 실수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이월예산은 본예산에 포함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 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이월사업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고충처리위원 미위촉

관계기관(부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와 같이 진흥원의 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일자별 현원 현황

기준일	2018. 6. 30.	2018. 12. 31.	2019. 4. 30.	2019. 6. 30.	2019. 12. 31.	2020. 3. 31.
현원	20명	28명	39명	39명	43명	36명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의 「인사관리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진흥원은 직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진흥원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두어 노사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0. 4. 13. ~ 4. 20.) 중 노사협의회와 설치와 고충처리위원 위촉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본 결과 2019. 4. 30. 기준으로 진흥원의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39명임에 따라 진흥원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

하여야 하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충처리위원 위촉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데도 2020. 4. 20.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직원의 복지증진과 진흥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등 노사 간 소통 관련 업무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설립초기 기관의 규모와 사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계획대비 사업이나 예산의 규모가 비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업무관련 담당자를 2019. 12월에 채용하여 추진하다가 2020. 2월 퇴사하여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하면서 2020. 상반기내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020년 내에 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협의회 설치 및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여 근로자의 고충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

감 사 위 원 회

시정·주의요구

제 목 결산서 작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영상산업문화진흥원(○○○○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에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에서는 결산과 재무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하도록 자체 재무 회계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2. 대행사업 등으로 취득한 자산 미계상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제10장 제4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준 제11장 제7조와 제40조에 따르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¹⁴⁾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경우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고, 예시로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에 대해서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0. 4. 13.~4. 20.) 중 2018년 이후 대항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의 계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제주웹툰캠퍼스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2019. 10. 10. 취득한 데스크톱컴퓨터 32대 49,868천 원은 유형자산에 해당하는데도 대항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434개 자산 408,220천 원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표 1] 대항사업으로 취득한 자산 미계상 명세

(단위: 천 원, 개)

취득일자	취득자산	금액	수량	대항사업
합계	-	408,220	434	-
2019. 10. 10.	데스크톱컴퓨터	49,868	32	제주웹툰캠퍼스 조성 및 운영사업
2019. 11. 11.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6,600	4	
2019. 11. 15.	냉장고 및 TV	1,372	2	
2019. 11. 22.	태블릿PC	90,898	42	
2019. 11. 28.	음향장비(스피커 등)	4,640	14	
2019. 11. 29.	태블릿 보관함	1,442	1	
2019. 11. 29.	태블릿PC 주변기기(스탠드 등)	17,170	52	

14)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을 말함

2019. 11. 29.	영상촬영장비(소니 카메라 등)	4,870	6	
2019. 11. 29.	웹툰도서 서가 등	4,400	5	
2019. 11. 29.	만화공간 가구(의자, 테이블 등)	4,464	28	
2019. 11. 29.	아이패드 및 애플펜슬	18,800	26	
2019. 11. 29.	빔프로젝터	4,890	1	
2018. 10. 4.	촬영지원장비(조명기기, 캠코더 등)	152,002	220	촬영지원장비 구축사업
2018. 11. 16.	촬영지원장비(차량)	46,804	1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자산과 비용 구분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진흥원 그룹웨어 구축 비용 48,274천 원은 무형자산인 컴퓨터소프트웨어 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비용인 연구개발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등 2건 65,544천 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표 2] 무형자산 계상 대상을 비용으로 처리한 내역

(단위: 천 원)

취득일자	취득 자산	금액	비용 처리 계정
합계	-	65,544	-
2018. 10. 4.	진흥원 그룹웨어 구축	48,274	연구개발비
2018. 12. 24.	진흥원 운영시스템 프로그램 구축	17,270	연구개발비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3. 연선납 임대료 수익 인식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제16장 제11조에 따르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¹⁵⁾에 따라 인식¹⁶⁾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연선납으로 받는 임대료는 선수수익¹⁷⁾으로 회계처리하고,

15) 거래의 완성정도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회계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16)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법무부·한국회계기준원) 제14장에 명시된 사례(14-3)를 보면 헬스장 이용료의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헬스장 요금이 연 60천 원이고, 이를 연선납(12개월)으로 받는 경우 헬스장 이용요금 60천 원은 매월 5천 원씩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17) 이미 수취한 수익 가운데 향후 당사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수익 부분을 부채로 설정하고, 향후 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부채를 차감

매월 1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수수익에서 차감하여 임대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0. 4. 13.~4. 20.) 중 2018년 연선납으로 받은 임대료의 수익 인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진흥원에 입주한 *******의 경우 임대기간이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이므로 연선납 임대료 5,113천 원 중에서 2개월분에 해당하는 852천 원만 2018년도 임대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5,113천 원 전부를 임대수익으로 계상하여 임대수익이 4,261천 원 과대계상 되는 등 연선납 임대료를 수령 시점에 전액 임대수익으로 인식한 결과 [표 3]과 [표 4]와 같이 2018년과 2019년 임대수익이 각각 10,488천 원, 10,478천 원 과대계상 되었다.

[표 3] 2018년 연선납 임대료 결산 현황

(단위: 천 원)

업체명	임대기간	연선납 임대료	2018년 결산임대수익(A)	2018년 정당임대수익(B)	차이(A-B)
합계	-	13,265	13,265	2,777	10,488
***	2018. 11. 1.~2019. 10. 31.	5,113	5,113	852	4,261
(주)*****	2018. 11. 1.~2019. 10. 31.	5,113	5,113	852	4,261
†††††	2018. 11. 1.~2019. 10. 31.	2,069	2,069	345	1,724
*****협회	2018. 4. 1.~ 2019. 3. 31.	970	970	728	242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2019년 연선납 임대료 결산 현황

(단위: 천 원)

업체명	임대기간	연선납 임대료	2019년 결산임대수익(A)	2019년 정당임대수익(B)	차이(A-B)
합계	-	12,573	12,573	2,095	10,478
(주)*****	2019. 11. 1.~2020. 10. 31.	5,113	5,113	852	4,261
CCC	2019. 11. 1.~2020. 10. 31.	1,120	1,120	187	933
***	2019. 11. 1.~2020. 10. 31.	5,113	5,113	852	4,261
*****	2019. 11. 1.~2020. 10. 31.	1,227	1,227	204	1,023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4. 매출 부가가치세 수익 인식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재무회계개념체계 제97조에 따르면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제16장 제5조에 따르면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장비시설 임대료와 건물 임대료 등을 수령할 경우 세무서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부가세예수금(부채)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0. 4. 13.~4. 20.) 중 진흥원의 장비시설 임대수익과 건물 임대수익 수익 인식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5]와 같이 2019년 건물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9,641천 원을 임대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금액인 2,695천 원이 건물 임대수익으로 과대계상 되는 등 2019년과 2018년 임대수익이 각각 2,695천 원, 8,356천 원 과대계상 되었다.

[표 5] 임대수익 결산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9년 결산금액	2019년 과대계상금액	2018년 결산금액	2018년 과대계상금액
합계	133,847	2,695	91,924	8,356
건물 임대수익	29,641	2,695	23,742	2,158
장비시설 임대수익	104,206	- ^{주)}	68,182	6,198

주) 2019년 장비시설 임대수익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임대수익 인식해서 과대계상금액 없음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자산 및 수익 관련 결산서 작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은

- ① “제2항 대행사업 등으로 취득한 자산 미계상” 과 관련하여 결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작성한 사항을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맞도록 수정 조치하고,(시정)
- ② “제3항 연선납 임대료 수익 인식 부적정” 과 “제4항 매출 부가가치세 수익 인식 부적정” 과 관련하여 앞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선납 임대료의 경우 임대료 수령 시점이 아니라 매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매출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구분	2018년	2019년
출연금수익(A)	2,150,000	2,388,000
운영경비(B)	1,311,347	2,587,033
운영경비 대비 출연금수익 비율(A/B)	163.9%	92.3%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공실 관리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2017. 6., 행정자치부) 1.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따르면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체수입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및 수익 증대 노력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진흥원의 「정관」 제5조와 제27조에 따르면 사업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진흥원의 사업비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과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운영경비의 상당부분을 출연금수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입주기업의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체 수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0. 4. 13.~4. 20.) 중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내에 입주한 기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2018. 9. 21.과 같은 해 11. 19. 두 번의 모집 공고를 한 결과 5개실 중에서 1개의 공실이 있는데도 10개월이 지난 2019. 9. 24.에야 추가 발생 공실 1개소 포함한 2개 공실에 대한 추가모집공고¹⁹⁾를 하였고,

이 때 참여기업이 없어 2개 공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안 마련 등을 통하여 공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도 2020. 4. 20. 감사일 현재까지 원인 분석, 개선안 마련 등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추가 모집 공고도 하지 않고 있다.

[표 2]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모집 공고와 입주 현황

모집 공고일	모집 공고	모집 공간(A)	입주기업(B)	모집 후 공실(A-B)	비고
2018. 9. 21.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5개실	2개	3개실	-
2018. 11. 19.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입주기업 추가 모집 공고	3개실	2개	1개실	-
2019. 9. 24.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및 제주웹툰캠퍼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	2개실	0개	2개실	-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공실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수익증대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3. 임대료 수입결의와 연체료 부과 등 수입 관리 업무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진흥원의 「재무 회계 규정」 제23조와 「입주기업 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 수입결의서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료와 전기, 상하수도 등의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8. 3. 30. (주)○○○○○○○○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제3조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연간임대료를 [표 3]과 같이 분납하도록 되어 있고, 공과금 등을 별도로 산출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19) 2019. 7. 25. 입주기업 1곳의 퇴거로 1개 공실이 추가되어 2019. 9. 24. 모집 공고일 기준 공실 수 2개임

[표 3] 계약서 상 연간임대료 분납 스케줄

(단위: 천 원)

구분	금액	납부기한
합계	4,564	-
1차 분납 임대료	1,134	2018. 3. 31.
2차 분납 임대료	1,139	2018. 6. 30.
3차 분납 임대료	1,143	2018. 9. 30.
4차 분납 임대료	1,148	2018. 12. 31.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임대차 계약서 재구성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임대료 등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세입의 징수결정을 통한 수입결의서의 작성과 함께 (주)○○○○○○○○에 임대료 등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업체에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수입결의를 통해 업체에 고지한 임대료 등을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0. 4. 13.~4. 20.) 중 (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고지와 납부 및 연체료 부과 of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2차 분납 임대료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상 납부기한이 2018. 6. 30.이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수입결의를 해서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수입결의일자와 고지일자가 각각 2018. 8. 16.과 2018. 9. 15.로 납부기한 이후에 수입결의와 고지를 하였다.

그리고 [표 4]와 같이 2018년 5월 관리비의 168천 원의 경우 납기 내에 납부가 되지 않았는데도 연체료 3천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6건 2,121천 원이 납기 내 납부가 되지 않았는데도 연체료 6건 61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²⁰⁾

20) (주)○○○○○○○○이 현재 퇴실하여(2019. 3. 31. 계약 종료) 연체료 부분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

[표 4] 연체료 미부과 명세

(단위: 천 원)

구분	고지내역		납부내역		납기 내 납부 여부	연체료 부과 여부	연체료	비고
	일자	금액	일자	금액				
합계	-	2,121	-	2,121	-	-	61	-
2018년 5월 관리비	2018. 6. 15.	168	2018. 7. 30.	168	×	×	3	-
2018년 7월 관리비	2018. 8. 15.	215	2018. 7. 30. 등	215	△	×	2	일부 미납
3차 분납 임대료	2018. 9. 15.	1,143	2018. 12. 17.	1,143	×	×	41	-
2018년 8월 관리비	2018. 9. 15.	239	2018. 12. 17.	239	×	×	9	-
2018년 9월 관리비	2018. 10. 15.	182	2018. 12. 17.	182	×	×	4	-
2018년 10월 관리비	2018. 11. 15.	174	2018. 12. 17.	174	×	×	2	-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5]와 같이 3차 분납 임대료 1,143천 원을 결산에 임대수익으로 반영하지 않는 등 총 6건 3,084천 원이 결산에 임대수익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표 5] 결산 미반영 명세

(단위: 천 원)

구분	금액	고지일자	납부일자
합계	3,084	-	-
3차 분납 임대료	1,143	2018. 9. 15.	2018. 12. 17.
2018년 8월 관리비	239	2018. 9. 15.	2018. 12. 17.
2018년 9월 관리비	182	2018. 10. 15.	2018. 12. 17.
2018년 10월 관리비	174	2018. 11. 15.	2018. 12. 17.
4차 분납 임대료	1,148	2018. 12. 15.	2018. 12. 17.
2018년 11월 관리비	198	2018. 12. 15.	2018. 12. 17.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임대료 수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체료 61천 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었고, 수익 관련 결산서 작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제3항 임대료 수입결의와 연체료 부과 등 수입 관리 업무 소홀” 과 관련하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임대료, 연체료 부과 등을 정확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항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공실 관리 소홀” 과 관련하여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부담이 있어 잦은 입주기업 모집보다 기존 입주기업의 임대계약 갱신 시기에 맞추어 일괄 모집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 등 입주기업 관리에 효율적이고, 2019년도 제주웹툰캠퍼스 조성사업 유치계획에 따라 제주웹툰 캠퍼스 입주기업 모집 또한 일괄하여 모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입주모집을 유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입주 모집 부진 사유에 대한 담당자의 현황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고, 1~2개년 동안의 운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진흥원 원장에게 개선 방안 건의를 검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9. 10. 15.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소요액이 1,000천 원이고 입주기업 모집으로 인해 임대수익 5,113천 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절감 등 입주기업 관리에 효율적이라는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공실 모집을 제주웹툰캠퍼스 입주기업과 일괄하여 모집하기 위하여 입주 모집을 유보하였다는 위 기관의 주장은 2018. 11. 19. 입주기업 모집 공고 결과 1개의 공실이 있는 상황에서 제주웹툰캠퍼스 공모사업 선정이 4개월이 지난 2019. 4. 5.이 되어서야 이루어졌고, 2019. 6. 5.이 되어서야

제주웹툰캠퍼스 조성사업 운영계획을 원장에게 결재를 득했으며, 실제 개소는 2019년 10월에 되었다는 점에서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2018. 11. 19. 입주기업 추가 모집 공고 이후 16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 까지 공실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원인 분석, 개선안 마련 등을 내부분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입주 모집 부진 사유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은

- ① “제2항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공실 관리 소홀” 과 관련하여 원인 분석, 개선안 마련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공실률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통보)**
- ② “제3항 임대료 수입결의와 연체료 부과 등 수입 관리 업무 소홀” 과 관련하여 앞으로 임대료 고지, 연체료 부과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

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 통보

제 목 물품 관리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에서는 진흥원의 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8. 2. 23. 「재산(물품)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근거한 물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진흥원의 「재산(물품) 관리 규정」 제3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재산(물품)관리관²¹⁾은 진흥원의 모든 재산을 관계 대장에 등록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비품인 경우 비품출납부, 도서인 경우 도서출납대장, 소모품인 경우 소모품대장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21) 진흥원의 「재산(물품) 관리 규정」에 따르면 재산(물품)관리관은 원장, 분임 재산(물품)관리관은 ○○○○팀장, 재산(물품)출납원은 회계담당자로 지정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재산(물품)의 증·감 변동이 있을 경우 관리자는 지체 없이 대장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매월 초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수량, 물품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고 조정, 등재, 손망실 처리 등을 통해 실보유 물품과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물품이 일치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흥원에서는 2018. 4. 19. 개원일부터 2020. 4. 20.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물품관리대장 미등록 명세” 와 같이 총 130개 물품, 510,959,68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면서 물품관리대장에 1건도 등록하지 않았고, 비품출납부 등 물품 관련 출납부를 비치·정리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매월 초 물품의 증·감 변동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흥원에서는 「재산(물품) 관리 규정」에 재물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18. 4. 19. 개원 이후 재물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진흥원의 물품 보유 현황 및 관리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물품의 취득·손망실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물품의 훼손·도난 등의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취득한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매월 물품의 증감 변동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기 바라며,**(시정)** 재물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물품관리대장 미등록 명세

(단위: 원)

연번	물품 명	취득수량	취득가격	취득일자
계	130개 물품	622	510,959,680	-
1	LED조명 SET	1	32,000,000	2018. 10. 4.
2	LED조명 보조기구	1	1,276,000	2018. 10. 4.
3	LED조명 보조기구	1	250,000	2018. 10. 4.
4	LED조명 무선컨트롤러	2	7,480,000	2018. 10. 4.
5	LED조명 콘트롤러 보조장비	4	2,640,000	2018. 10. 4.
6	LED조명 유선컨트롤러	4	1,760,000	2018. 10. 4.
7	조명 밸러스트	1	19,500,000	2018. 10. 4.
8	조명 램프	1	3,300,000	2018. 10. 4.
9	조명 램프	2	2,860,000	2018. 10. 4.
10	조명 램프	5	125,000	2018. 10. 4.
11	조명기 스탠드	4	1,160,000	2018. 10. 4.
12	조명기 스탠드	4	840,000	2018. 10. 4.
13	조명기 스탠드	2	510,000	2018. 10. 4.
14	조명기 스탠드	2	1,738,000	2018. 10. 4.
15	조명기 스탠드 보조장비	1	250,000	2018. 10. 4.
16	조명 액세서리	6	342,000	2018. 10. 4.
17	조명 액세서리	4	1,980,000	2018. 10. 4.
18	조명 액세서리	2	292,000	2018. 10. 4.
19	조명 액세서리	4	484,000	2018. 10. 4.
20	조명 액세서리	2	242,000	2018. 10. 4.
21	조명 액세서리	2	1,228,000	2018. 10. 4.
22	조명 액세서리	4	276,000	2018. 10. 4.
23	조명 액세서리	6	876,000	2018. 10. 4.
24	조명 액세서리	1	252,000	2018. 10. 4.
25	무선영상송수신기	3	666,000	2018. 10. 4.
26	무선영상송수신기	1	840,000	2018. 10. 4.
27	5.7K캠코더	1	8,000,000	2018. 10. 4.
28	카메라 액세서리	2	820,000	2018. 10. 4.
29	카메라 액세서리	2	832,000	2018. 10. 4.
30	카메라 그립장비	1	1,700,000	2018. 10. 4.
31	무선렌즈제어시스템	2	3,800,000	2018. 10. 4.
32	촬영용 카트	2	3,000,000	2018. 10. 4.
33	촬영용 삼각대홀더	2	146,000	2018. 10. 4.
34	촬영용 트리플홀더	2	252,000	2018. 10. 4.
35	촬영용 보조함	2	524,000	2018. 10. 4.
36	촬영용 촬영가방	2	166,000	2018. 10. 4.
37	촬영용 카메라마운트(대)	1	700,000	2018. 10. 4.
38	촬영용 카메라마운트(중)	1	650,000	2018. 10. 4.
39	촬영용 조명가방	2	166,000	2018. 10. 4.
40	촬영용 라인고리	4	148,000	2018. 10. 4.
41	촬영용 붐킵&홀더	2	142,000	2018. 10. 4.
42	촬영용 옵션장착핀	8	296,000	2018. 10. 4.
43	스마트카드	2	286,000	2018. 10. 4.
44	멀티트랙필드레코더	1	1,900,000	2018. 10. 4.
45	멀티트랙필드레코더(보조)	1	132,000	2018. 10. 4.
46	멀티트랙필드레코더(보조)	2	660,000	2018. 10. 4.
47	무선음성가이드	2	1,960,200	2018. 10. 4.
48	편집용 컴퓨터	2	20,636,980	2018. 10. 4.

49	편집용 컴퓨터	4	6,052,200	2018. 10. 4.
50	태블릿PC set	2	2,569,820	2018. 10. 4.
51	장비정리선반	13	3,289,000	2018. 10. 4.
52	장비정리선반	1	121,000	2018. 10. 4.
53	장비정리선반	1	88,000	2018. 10. 4.
54	촬영보조장비	3	2,100,000	2018. 10. 4.
55	촬영보조 기타 액세서리	3	82,500	2018. 10. 4.
56	촬영보조 기타 액세서리	3	181,500	2018. 10. 4.
57	촬영보조 기타 액세서리	3	19,800	2018. 10. 4.
58	촬영보조 기타 액세서리	3	66,000	2018. 10. 4.
59	촬영보조 기타 액세서리	10	100,000	2018. 10. 4.
60	촬영보조 기타 액세서리	3	165,000	2018. 10. 4.
61	촬영보조 기타 액세서리	2	34,000	2018. 10. 4.
62	촬영보조 기타 액세서리	3	132,000	2018. 10. 4.
63	촬영보조 기타 액세서리	1	275,000	2018. 10. 4.
64	촬영보조 기타 액세서리	1	220,000	2018. 10. 4.
65	촬영보조 기타 액세서리	30	240,000	2018. 10. 4.
66	촬영보조 기타 액세서리	2	1,000,000	2018. 10. 4.
67	촬영보조 기타 액세서리	7	3,500,000	2018. 10. 4.
68	촬영보조 기타 액세서리	5	300,000	2018. 10. 4.
69	촬영지원장비 운반용 탑차	1	46,803,500	2018. 11. 16.
70	빔 프로젝터	1	9,120,000	2018. 10. 17.
71	빔 프로젝터	1	2,500,000	2018. 10. 17.
72	스크린	1	550,000	2018. 10. 17.
73	스크린	1	495,000	2018. 10. 17.
74	음원라이브러리	1	5,218,000	2019. 7. 23.
75	데스크톱PC	32	49,600,000	2019. 9. 6.
76	TV	1	960,000	2019. 10. 25.
77	냉장고	1	412,000	2019. 10. 25.
78	빔 프로젝터	2	5,300,000	2019. 10. 31.
79	스크린	2	1,300,000	2019. 10. 31.
80	태블릿PC	15	42,000,000	2019. 11. 8.
81	태블릿PC	17	18,700,000	2019. 11. 8.
82	태블릿PC	10	20,665,240	2019. 11. 8.
83	스탠드	15	12,750,000	2019. 11. 25.
84	스탠드	10	1,450,000	2019. 11. 25.
85	그립펜	27	2,970,000	2019. 11. 25.
86	파우치	10	490,000	2019. 11. 25.
87	빔 프로젝터	1	4,890,000	2019. 11. 26.
88	카메라	1	2,390,340	2019. 11. 27.
89	렌즈	1	930,000	2019. 11. 27.
90	렌즈	1	300,000	2019. 11. 27.
91	삼각대	1	340,000	2019. 11. 27.
92	마이크	1	290,000	2019. 11. 27.
93	짐벌	1	620,000	2019. 11. 27.
94	스피커	2	1,600,000	2019. 11. 25.
95	스피커 삼각 스탠드	2	300,000	2019. 11. 25.
96	오디오믹서(베링거)	1	300,000	2019. 11. 25.
97	마이크	2	600,000	2019. 11. 25.
98	마이크	2	300,000	2019. 11. 25.
99	스피커	2	600,000	2019. 11. 25.
100	스피커 브라켓	2	140,000	2019. 11. 25.
101	앰프	1	300,000	2019. 11. 25.
102	iPad	13	16,913,000	2019. 11. 26.
103	Apple Pen	13	1,887,600	2019. 11. 26.
104	서가	3	1,719,000	2019. 11. 26.

105	선반(a)	12	1,884,000	2019. 11. 26.
106	선반(b)	6	798,000	2019. 11. 26.
107	테이블	4	1,188,000	2019. 11. 27.
108	의자(카페용)	16	1,196,800	2019. 11. 27.
109	BAR 테이블	2	858,000	2019. 11. 27.
110	BAR 의자	6	1,221,000	2019. 11. 27.
111	방석	22	266,200	2019. 11. 27.
112	레이저포인터	1	16,000	2019. 11. 27.
113	사무용PC 데스크톱	16	17,760,000	2018. 5. 12.
114	사무용PC 모니터	16	3,840,000	2018. 5. 14.
115	사무용책상	2	516,000	2018. 5. 25.
116	사무용책상	12	2,196,000	2018. 5. 25.
117	이동식서랍장	2	392,000	2018. 5. 25.
118	이동식서랍장	12	1,476,000	2018. 5. 25.
119	일반용의자	2	534,000	2018. 5. 25.
120	일반용의자	12	3,096,000	2018. 5. 25.
121	캐비닛	18	4,788,000	2018. 5. 25.
122	파티션	2	510,000	2018. 5. 25.
123	파티션	2	538,000	2018. 5. 25.
124	파티션	8	1,784,000	2018. 5. 25.
125	파티션	12	2,724,000	2018. 5. 25.
126	쇼파	1	930,000	2018. 10.
127	TV	1	700,000	2018. 10.
128	사무용PC 모니터	10	2,400,000	2019. 3. 29.
129	사무용PC 데스크톱	10	11,000,000	2019. 4. 1.
130	승용차	1	42,024,000	2019. 8. 22.

자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